

(미래정책연구실, 2010.01.25)

□ 개요

- 농지연금제도 : 고령농에게 농지를 담보로 매달 연금을 지급하여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고, 고령농 사망 시 그 농지를 처분하여 상환하는 제도

* 예) 70세 고령농이 2억원짜리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농지연금에 가입하면 사망시까지 매달 약 65만원* 정도를 연금으로 받게 됨(예상금액이며 향후 상품모형 설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)

- 가입자격: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고, 영농경력 5년 이상이며,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총면적이 3만m² 이하인 농업인

- 담보로 제공하는 농지는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않아야 하며, 압류·가압류·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니어야 함.

-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그동안 가입자가 받은 연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저당권을 해지하거나, 담보농지를 처분하여 회수

- 이 경우 농지연금 상환액은 담보농지 처분가격 범위내로 한정되므로 담보농지를 처분하고 남는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고, 부족한 금액은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음.

- 배우자가 계속하여 연금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승계 절차를 거쳐 이어서 받을 수 있음.

□ 기대효과

- 농지연금 가입 시, 주택연금과는 달리 담보 목적물인 농지를 경작할 수 있고 임대할 수도 있어 실질적으로 주택연금보다 더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.

* 예) 70세 고령농이 2억원 상당의 논을 담보로 농지연금 가입 시:
 연금액 65만원/월 외에, 벼를 경작할 경우 32만원/월, 임대할 경우 19만
 원/월 추가수입 발생

○ 즉, 주택연금 가입자는 주택을 활용한 추가 수입 확보에 제한이 있으나,
 농지연금은 가입기간 동안 그 농지를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기
 때문에 연금 외에 추가 수입을 얻을 수 있음.

□ 추진계획

- 농지연금 시행 준비를 위해 금년도 예산 22억원 확보
- 상품모형 설계·운영시스템 개발 등을 연내 마무리
- '11년부터 농지연금 본격 시행

<참고>

○ 농지연금 월 지급금(추정)

농지가격	추정 월지급금	농지가격	추정 월지급금
1억원	325천원	3억원	975천원
2억원	650천원	4억원	1,031천원

* 추정조건 : 대상자 70세, 농지가격 상승률 1.55% 가정

* 위 금액은 추정치이며, **향후 상품 개발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임.**

○ 논 1ha당 연간 수입 및 임차료(추정)

단위: 원

	순수익	조수입	임차료율	임차료 ¹⁾
논 벼	3,836,850 (월 319,738)	10,133,620	22.5%	2,280,064 (월 190,005)

1) 조수입 × 임차료율

* 논의 공시지가 평균금액이 약 2만원/m²인 점을 감안시 2억원짜리 논의 면적은
 약 10,000m²(1ha)에 해당